

#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중 “법”을 각각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소속행정기관”을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제2조제1항제2호”를 “제2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중 “설립증”을 각각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중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상”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을 “각각 1명씩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기관장”을 각각 “설립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을”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p> <p>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p> <p>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p> <p>4. ~ 8.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p> <p>-----</p> <p>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p> <p>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p> <p>-----</p> <p>3.-----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p> <p>-----</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협의회는 <u>설립증</u>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⑥ (생략)</p>	<p>⑤-----<u>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협의회와 설립인가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생략)</p> <p>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u>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u>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u>관련공무원을 협의에</u> 배석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u>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u>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10조(협의회와 설립인가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u>공무수행상</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u>각각 1명씩의</u>-----</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협회의 의무) ① (생략)</p> <p>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u>기관 장에게</u>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u>기관 장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협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u>설립기관의 장</u>-----</p> <p>-----<u>설립기관의 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u>공무원</u>은 둘 수 없다.</p>	<p>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u>공무원을</u>-----</p>

## 관련 법령

###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회의 구성에 관한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 예산회계법 (폐지 2006.10.4, 법률 제8050호)

「예산회계법」을 폐지한다.

부 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산회계법」 폐지 ⇒ '국가재정법' 제정/국가공무원에 적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07665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방자치법) <제8423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30일
3.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26)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 1. 제안이유

「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 본 개정 조례 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법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